

## 진실 또는 허위인지 여부의 확인을 부주의하게 무시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할 때는 명예훼손이 성립

Costello v. Capital Cities Communications II Med. L. Rptr. 1738(일리노이 세인트 클레어 카운터 제 20 순회법원)

### 사실개요

피고 신문사는 일리노이 주 세인트클레어카운터 위원회 의장인 원고가 어떠한 세금의 증가도 반대한다고 공언하고도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였을 뿐 아니라 성실성이 부족하고 직무상 의무이행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실었다. 원고는 그의 명예가 훼손당하였다 하여 피고 신문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처음에는 청구원인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여 달라는 피고들의 신청을 받아 들였으나 항소법원에서 이를 뒤엎고 1심 법원으로 재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환송하였다.

### 판결요지

피고 신문사가 카운터위원회 의장인 원고가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허위이고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발표함에 있어 진실 또는 허위인지의 여부를 부주의하게 무시하였음이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면 피고 신문사는 원고에게 보상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 판결이유

스크라이브너 판사

이 사건은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이다. 이 법원은 배심원 없이 사실확정의 권한을 가지고 증인들의 신뢰도, 선입관 및 편견의 유무와 그들의 증언의 중요성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은 각 증인의 태도, 증언과 반대신문을 통하여 나타난 미묘한 차이점을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일리노이 주법상 법원은 각 당사자가 자신들을 위하여 내세울 수 있는 증인의 수를 고려할 수도 있다.

미국 대법원은 St. Amant v. Thompson(390US727) 사건에서 「부주의한 무시」(recklessdisregard)라는 용어의 정의를 시도하여 「부주의한 행동은 상당히 신중한 사람이라면 발표하였을 것인가 또는 발표하기 전에 조사하였을 것인가에 의하여 판가를 되지 아니한다. 이에 는 피고가 사실상 그의 발표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가졌다고 결론을 내릴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의심을 가지고 발표하는 경우에 진실 또는 허위인지의 여부를 부주의하게 무시하였다고 할 수 있고 현실적 악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실시하였다.

위 법원은 나아가 「그러나 공직자에 의하여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의 경우, 피고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고 발표하였다고 증언함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유리한 배심원 평결을 보장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배심원들은 발표가 진실로 선의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실시하였다.

이 법원의 항소심인 일리노이 주 제 5 지구 항소법원은 이 사건의 환송판결에서 「이 사건에서 원고를 거짓말쟁이라고 함으로써, 신문은 원고의 성실성의 결여와 그의 공직상 의무수행능력의 부족을 비난하였다. 이 주장들은 영성하고 비유적인 의무로 또는 단지 수식적인 과장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문은 의견을 표시할 것을 의도하여 원고는 부정직한 사람이고 부정직한 지도자라고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이유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적인 기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사실의 문언상 그것이 특정한 경우의 원고의 행동의 단순한 비난에 그치지 아니하고 원고의 인격일반에 대한 위법한 침해임이 명백히 드러난다. 따라서 위 사실은 원고에게 그의 직무상 의무수행의 무능력과 성실성의 결여 또는 정직성의 부족을 탓하고 있으므로 이는 실질적인 손해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명예훼손(libel per se)을 구성한다」 라고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위 항소법원은 「위와 같은 말이 단지 신문의 사실란에 실렸다 하여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 법원은 남은 두 가지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사의 허위 여부의 문제와 현실적 악의의 문제이다.

#### 1980. 12. 31 자 기사의 허위 여부

위 기사를 그 문언의 의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피고들은 원고가 어떠한 세금증가도 막기 위하여 강력하고 효과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기로 약속하고도 세인트크레어카운티 위원회가 통과 지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1/4 센트의 판매세를 통과시키도록 허용함으로써 피고들과 그를 선출한 대중을 속였다고 기술한 것이다. 그 기사는, 제리 코스테로는 그 회의를 주재하였으므로 새로운 세금에 대한 유일한 책임자라고 하였다. 나아가 대중들은 2년 더 거짓말쟁이 내지 그의 사기적인 지도력으로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와 사실에 의하여 위 기사는 완전히 그리고 명백하게 허위이고 문제된 경우의 세인트크레어카운티 위원회, 그 의장과 코스텔로의 노력에 과하여진 지방자치적절차의 진실된 해설을 결여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위 기사는 카운터 위원회 의장에게 카운터위원회 회의 시 어떠한 결의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보도하지 아니하였다. 그 기사는 카운터 위원회가 문제된 날 저녁 어떠한 새로운 세금안도 채택하지 아니 하였다거나 정세권한부여 결의를 연기하자는 제안을 부결시켰음을 보도하지 아니하였다. 1980, 12. 31. 카운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모든 증인들은 위 권한부여 결의에 찬성하였든 반대하였든 모두 위원회에서 어떠한 세금안도 통과되거나 동의 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있었다. 원고의 정치적 동조자와 반대자들은 모두 문제된 날 저녁에 일어난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는 피고들도 다루지 않고 있다. 원고들의 3번 서증은

위원회에 준수된 지방자치적 절차를 확인시켜준다. 피고들은 위원회에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거나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의를 통과시키지 아니 하였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를 극히 기술적인 문제로서 진실이 아니라고 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극히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세인트크레어카운티 주민들은 피고들에 의하여 제리 코스텔로가 부과한 1/4 센트 판매세를 물게 되었다고 믿게 되었다.

피고들의 1980. 12. 31. 일어난 일에 관한 사실적인 주장과 해석은 그럴 듯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루이스 캐롤의 「거울을 통하여」(Through the Looking-Glass)라는 작품에 나타난 허황된 논리와도 같은 어의에 관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 현실적 악의를 증명하는 피고들의 부주의한 무시

이 법원은 피고들의 조사절차에 있어서 엄청난 주의와 노력의 결여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처음에 피고들은 원고와 카운티 위원회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하여진 법적인 절차를 전혀 무시하였다. 이를 영성한 보도라거나 부주의한 무지라고 하여 문제삼지 아니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그레이브즈도 와일도 그 회의를 취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모두 회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없었다. 와일에 의하면 그는 원고의 최초의 선거 이전 인터뷰 이후 원고의 동향을 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원회 회의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가진 피고의 유일한 피용자는 스티븐 파운즈였다. 그러나 그는 증인으로 신청되지 않았다.

하그레이브즈에 따르면 그는 세인트크레어카운티의 정치에 관한 통찰력 있는 정치적 논평가라고 한다. 하그레이브즈는 당파적 동기에 관계없이 그는 히키와 앤더슨을 제외한 위원회 구성원 중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하그레이브즈는 믿을 만한 위 두 취재원에 의하여 코스텔로의 위원회를 조종하고 그리하여 세인트크레어 주민들에게 1/4 센트의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하고 권위적인 권력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첫번째 믿을 만한 취재원인 히키는 하그레이브즈에게 그 정반대로 말하였다. 사실상 하그레이브즈와 히키는 하그레이브즈가 기사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접촉하였다고 주장하는 믿을 만한 취재원의 수조차 맞출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키는 그와 코스텔로는 위원회 회의 전에 문제의 결의안을 4 월의 주민투표 시까지 연기하기로 하는 제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만났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관하여 히키가 실제로 쓴 메모가 증거로 나와 있다. 히키는 나아가 그는 결의안에 반대하였고 하그레이브즈에게 코스텔로도 반대 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지막으로 히키는 하그레이브즈에게 회의 시 일어난 일을 확인하기 위하여 파운즈에게 조회하여 보라고 말하였다.

그 이전에 신문은 파운즈가 쓴 이 문제에 관한코스텔로의 열성적인 공적 및 사적인 입장에 관한 기사를 실은 일이 있었다. 추가적으로 피고측은 히키를 그들을 위한 증인으로 신청하지 아니 하였다. 하그레이브즈로부터 떠나 또 다른 믿을 만한 취재원인 앤더슨에 관하여 보면 그는 코스텔로와의 일반적인 대화만을 기억한다고 진술하고있다. 그는 코스텔로가 문제된 결의안에 대한 공적인 입장에 배치되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앤더슨은 기껏해야 증언대에 두 번 출석하여 특별한 지식이 거의 없이 막연한 느낌이나 의견만을 이야기하였을 뿐이다.

앤더슨과 히키는 모두 그들에게 최초의 카운터 위원회 참석이었고, 코스텔로 역시 최초의 위원회 참석이었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근거들에 기하여 이 법원은 왜 하그레이브즈가 공판전 개시절차(pre-trial discovery)에 응하지아니하려 하였는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피고측 증인도 문제된 날 저택에 정확하게 일어난 일에 관하여 증언한 원고측 증인의 수를 반박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측 증인인 볼글렌은 코스텔로가 카운터 위원회를 조종하였다는 일반적인 의견을 내놓았으나 반대신문의 결과 그의 의견의 근거는 막연한 추측임이 밝혀졌다. 글렌은 위원회가 통과지구에 관한 결의에 관하여 여러 개 과당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도 사실은 위 결의를 찬성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원고측 및 피고측 증인들 모두 코스텔로는 높은 성실도를 지녔고 세인트크레어의 모든 지역에서 존경 받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어떤 증인도 이 증언을 반박하거나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들은 다른 위원회 구성원에게 확인한 바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들은 위원회 의장에게 과하여진 법적인 요건에 관하여 주의 법무담당관에게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카운터 서기사무소에서 그 회의의 테이프녹음을 들어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2 주간 통과문제 연구위원회의 의장인 다리우스 몽켄에게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패트 설러번, 프란시스 투체트나 월라드 바델과 같은 카운터 위원회의 노련한 경력을 지닌 선임 민주당 또는 공화당 위원회구성원에게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하그레이브즈와 와일은 통과문제에 관한 코스텔로의 공적인 입장에 관하여 그들의 신문에 전에 실린 기사를 알지 못하였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진실을 알지 못하였고 진실을 보도하려고 신경 쓰지도 않았다.

와일은 1980. 12. 29. 회의를 전후한 코스텔로의 노력에 관하여 아무런 직접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하그레이브르에게 「거짓말쟁이」라는 용어를 쓰라고 지시하였으므로 더욱더 부주의 하였다. 그는 하그레이브즈와 파운즈의 평가에 의존한 것이다. 히키는 하그레이브즈에게 피고들이 사실에서 대중에게 발표한 것과는 정반대로 말하였다. 앤더슨은 단지 일반적 가능성에 관하여만 말하였다. 그러므로 법원은 피고들의 행동에 비추어 다음 둘 중의 결론의 하나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들은 무슨 이유에서 인가 진실된 사실을 무시하고 원고의 성실성과 인격을 공격하기로 악의적으로 미리 마음먹고 있었던 것이든지, 또는 피고들의 객관적 사실수집노력이 너무 형편없고 부적당하며 또한 그들의 취재원들과의 영성한 대화로부터 얻은 진실조차 무시하였던 것이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즉 피고들은 사실에 관하여 심각한 의문을 품고 있어야만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코스텔로가 거짓말하였다는 주관적인 믿음은 진실에 기한 것이 아니다. 더욱 나쁜 것은 그들은 사실을 알면서도 진실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보도한 것이다. 이러한 신문보도 상 일어난 일은 Sharon v. Time 사건에 나타난 조사를 위한 노력과는 도저히 비교될 수 없다.

피고들은 미국 대법원의 Bose corp, v. Consumers Union of United States, Inc. (104S, Ct. 1949) 사건을 원용하려고 하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위 사건에서 핵심문제는 무생물체 즉 스테레오 장치의 작동에 관한 과학적 의견의 격렬한 대립에 관한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는

이 법원이 기사의 문언을 무색적으로 고려하거나 위 Bose 사건에서 지적된 바에 따라 피고들 대리인이 제시하는 바와 같은 여유를 가질 수 없다.

#### ○ 입증책임

원고가 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하여는 이 법원이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명예훼손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든 이유들에 의하여 이 법원은 사실의 확정 권한자로서 원고가 그의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인정하는 바이다.

#### ○손해배상

피고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명예훼손이 실질적 손해의 발생을 입증할 필요 없이 성립하는 경우라면 명성의 침해는 추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피고들 자신에 의하면 신문의 1일 발행부수는 약 40,000가 구분 정도이고 가구 당 3내지 4명의 독자가 있다고 한다. 확실히 세인트크레어카운티의 150,000 주민들은 코스텔로가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들었다. 원고측의 그의 성격과 평판에 관한 증언은 피고들에 의하여 의문시되거나 반박되거나 다투어지지 아니하였다. 기록상 코스텔로의 부인이 증언석에서 그의 모욕감과 괴로움을 설명하며 드러난 바와 같은 고통과 개인적인 비애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는 없다.

피고들이 진술한 바와 같이 법정은 일리노이 주 복권추첨장은 아니다. 그러나 법정은 원고에게 가하여진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판단의 장소이다.

코스텔로의 평가는 그의 명성과 평판에 달려있다. 이는 피고들에 의하여 침해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보상적 손해배상으로서 450,000 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한다.

다음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하여 살핀다. 이 법원은 하그레이브즈의 비난가능성과 피고회사의 그 대리인 내지 피용자인 다윈 와일을 통한 피고 회사의 행동 사이에 상당한 양적인 차이가 있음을 중시한다. 만일 사실이 하그레이브즈가 제시한 원래의 문언대로이었다면 제 5지구 항소법원이 법률문제로서 그 기사가 그 자체로서 명예훼손적이라고 판단하였을 는지는 의문이다. 이 법원은 와일은 코스텔로에 관하여 악의적으로 미리 마음먹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파일의 증언시 태도와 신빙도는 기사에 실린 말들과는 정반대이다. 만일 와일이 말한대로 그가 문제된 사항의 진실성을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150,000 명의 독자 앞에서 원고의 인격을 공격하고 그의 성실성과 명성을 비난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러한 악의적 행동에 비추어 이 법원은 캐피털 시터즈 커뮤니케이션 회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600,000 달러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은 보상적 손해배상으로서 450,000 달러를,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 600,000 달러를 포함 1,050,000 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바이다. 공판 후 신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분이 있거나 상소보증금증서의 동의를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